

의안번호	2200979
의 퇴 인	백혜련의원
회 답 일	2024. 8. 22
추 계 번호	24D1325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출석요구 조사 시, 통역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하여 통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2억 6,400만원(단년도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화상장치 구입	1,264	0	0	0	0	1,264	25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181조의2 (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통역) 신설	법원은 통역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2	안 제221조 (제3자의 출석요구 등) 신설	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역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181조의 2 (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통역)	×	• 미대상: 현재 전국의 344개 모든 형사법정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

2	안 제221조 (제3자의 출석요구 등)	○	-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조사 시, 통역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- 검찰청과 경찰청의 경우,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구축(정보화) 사업을 통해 사건관계인이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 PC, 스마트폰 등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‘원격화상조사시스템’ 구축을 추진 중이나, 개정안에 따른 시스템 추가개발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구축(정보화) 사업¹⁾은 2021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으며, 2024년 297억 2,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
 - 다만,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의 경우, 사건관계인만 이용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중으로, 개정안에 따라 통역인도 이용가능하도록 할 경우, 시스템의 추가개발 및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재 시스템 추가개발에 따른 비용 관련 자료 미비로 추계에서 제외함
- 경찰청의 인터넷 화상장치 설비 구입 관련 자료는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함
-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

1) 코드: 7038-301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원격통역(안 제221조제3항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조사 시, 원격통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비디오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추가 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- 검찰청과 경찰청의 경우,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구축(정보화) 사업을 통해 사건관계인이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 PC, 스마트폰 등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‘원격화상 조사시스템’ 구축을 추진 중
 - 다만,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은 사건관계인만 이용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통역인도 이용가능하도록 할 경우, 시스템의 추가개발 및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, 이에 따른 비용 관련 자료 미비로 추계에서 제외함
-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격통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웹캠 및 스피커폰 등 설비구축이 필요
 - 검찰청의 경우, 983개 조사실에 1,381개의 웹캠 등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추가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 -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, 278개 관서 3,976개 조사실에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, 3,976개 조사실에 웹캠 등 장비를 보급하는데 12억 6,468만원(2025년 단년도)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2] 경찰청 화상장치 구입 소요비용

(단위: 개, 천원)			
	갯수	단가	추가재정소요
웹캠	3,976	159	632,184
USB스피커폰	3,976	159	632,184
합계			1,264,368

자료: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출석요구 조사 시, 통역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하여 통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2억 6,400만원(단년도)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화상장치 구입	1,264	0	0	0	0	1,264	25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검찰청과 경찰청이 현재 구축 중인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통역인도 이용가능하도록 고도화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,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상이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